

---

#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 Q&A 자료집<sup>2st</sup>

---

2021. 5.



한 국 연 구 재 단

본 자료집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사업관리규정(훈령, 지침, 집행기준)과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목 차

|                         |    |
|-------------------------|----|
| I. 교육연구단(팀) 운영 .....    | 1  |
| II. 교육연구단(팀) 참여인력 ..... | 8  |
| III. 교육연구단(팀) 사업비 ..... | 12 |
| IV. 사업예산 .....          | 20 |
| V. 대학원혁신 .....          | 22 |

 **시림투자** 당신의 꿈에  
투자합니다!

## I 교육연구단(팀) 운영

### 1. 자체 운영 규정

(1) 자체운영규정 수립을 위한 작성 지침이나 안내서 배포 예정인가요?

- 교육연구단(팀) 자체운영규정에 대한 재단차원의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팀) 자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들 중 국제 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어떠한 형식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관련 안내자료(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가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학금 상한선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육연구단(팀) 운영규정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나요?

- 장학금 상한액을 정하는 바는 없으나, 자체운영규정 내 상한액 설정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 2. 연구 윤리

(1) 관리 운영 지침 제5조 연구윤리 확립 관련하여 연구윤리과목 개설 항목은 학과(대학원) 내 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 연구윤리과목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개설하시면 되며, 교과과목/ 비 교과과목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신규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 개설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또한 KIRD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강의 및 1회성 특강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관리 운영 지침 제5조 제1항에 보면 연구윤리과목 등을 개설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PASS/FAIL 등의 과목은 인정이 안되는 것이지요? 또한, 참여대학원생들이 반드시 이러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것이지요?

- PASS/FAIL 형태의 과목도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BK21 사업 참여 학과 참여대학원생들은 학위과정 내 최소 1회는 이수를 하셔야 하며, 해당 이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수증, 성적증명서 등)을 보관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인권 침해 예방 온라인 교육 수강 시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으로 재입학 한 경우나 대학원생에서 신진연구인력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재수강해야 하나요?

- 학위과정 변경 및 신분변동(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등)이 생겼더라도 이전에 수강한 경우 재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홈페이지 개설

(1) 교육연구단(팀) 홈페이지 구축을 사업 수행 학과 홈페이지를 활용해도 되나요?

- 기존 학과 홈페이지 내 교육연구단 소개 관련 별도의 메뉴 탭을 만들어 운영 가능합니다.

(2) 사업신청서 공개 시 [첨부]에 개인정보가 많은데 공개가 필수인가요?

- 사업 신청당시 제출한 신청서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교육연구단(팀) 홈페이지 개설 이후 사업신청서 탑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안내드리는 사항이므로, 교육연구단(팀) 자체적으로 참여인력 선정 시 개인정보동의 관련 서류를 받아 놓으셨다면 해당 동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 (3) 사업신청서 공개 시 사업비 집행계획의 경우 사업전담인력의 인건비도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도 공개가 되어야 하나요?
- 신청서 내 사업비 집행계획은 비공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 4. 평가 관련

- (1) 1차년도 자체평가 일정 및 사업 공고 시 연차점검(컨설팅)으로 명시된 평가 일정이 자체평가에 해당하나요?
- 사업 기본계획 공고문에 기재된 연차점검(컨설팅)은 자체평가와는 별개로 하반기('21.11~) 중 ‘사업운영관리 컨설팅’ 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2) 단계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또, 1차년도에도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올해 별도의 연차(단계)평가는 없으며, 관리 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교육연구단(팀) 별 자체평가(21년 9~10월 중 시행)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2분기)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 자체평가 시기와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훈령에 서술된 연 1회가 1차 년도의 경우 2020.09.01~2021.2.28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까?
- 자체평가는 매년 9월1일부터 다음 차년도 8월31일까지 1년간의 실적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 1차년도의 경우, '20.9.1~'21.8.31(1년간) 실적에 한하여 '21년 9~10월 중 자체평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 (4) 자체평가 시 반드시 외부 평가자가 있어야 하는지요?
- 국내·외 주요 평가인증기관 또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평가단에 의해 평가가 진행되어야하며, 이때 동일 소속 내 타 학과 교수님도 외부평가자로 간주합니다.

- (5) 자체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등의 준비를 위해 BK21 평가 지표, 실적 인정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언제쯤 알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각 평가별 세부평가지표 및 실적 인정기준 등은 해당 평가가 시행되는 시점 전에 개발 및 공지가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5. 실적 인정기준

- (1) 하나의 대학 학부에서 3개 대학원으로 분리되어 3개 대학원 모두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참여교수의 논문실적이 본인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명이 아닌 타 학과명으로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참여교수의 경우, 동일 대학 내 타 학과명으로 소속이 표기된 경우도 대학명이 확인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 (2)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논문 실적 인정기준(소속표기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대학명과 BK21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명(융합전공일 경우 융합전공 명) 또는 교육연구단(팀) 명 기재 시 인정됩니다. 단, 학과(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논문의 경우 참여 대학교로 명기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합니다.
- (3)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서 구두발표건수는 일반세션의 구두발표 건만 발표건수로 인정되는 사항이 맞나요? (keynote, invited session, invited talk, 포스터 발표 미포함)
- 평가 시 세부 실적인정기준은 해당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최종 확정 및 공지될 예정입니다.
- (4)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으로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라고 하셨는데, 꼭 “외국인” 이여야만 하나요? 외국기관 소속 내국인이면 안되는지요?
-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적이 아닌 해당 소속 기관으로 판단합니다.

(5)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 간의 인정기준이 다른지 문의 드립니다.

-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은 동일합니다. 과학기술분야는 구두발표 20건 이상입니다.

(6) 타 사업 논문 실적과 중복되는 경우 기여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타 연구개발사업 성과로 제출한 실적을 BK21 사업에 중복 제출할 수 있으며, NTIS 입력 시 기여율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7) 평가보고서 작성 시 성과부분입니다. 재선정평가 혹은 중간평가 시 참여 인력들의 성과평가를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인정기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년도(2020년 9월1일~2021년 2월28일)의 기간도 성과 인정기간에 포함이 됩니까?

- 1차년도 사업기간에 나온 실적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평가 시 세부 실적인정기간 및 실적인정기준은 해당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최종 확정 및 공지될 예정입니다.

(8) 신진연구인력이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가 277만원으로 기준에 부합하지만 1년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보고서 작성 시 퇴사한 신진연구인력의 업적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월 지급 기준액 300만원(월 급여액 276.9만원) 이상 지급한 기간동안 신진연구인력의 업적은 성과로 작성 가능합니다.

(9) 국제학술대회인정기준은 사업비 집행 시에만 적용하고, 보고서 작성 시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연구단(팀) 판단 하에 작성하는 한가요? 학술대회는 앞으로 정량에서는 제외되고 정성실적으로만 적용되나요?

-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사업비 집행 시에만 적용되며, 실적기준과

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온라인 출판만 하는 저널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 되나요?

- 오프라인 논문(인쇄물로 출판된 학술지 논문)만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으로만 게재된 논문일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세부 실적인정 기준은 평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바 해당 평가 시 공고되는 서식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6. 기타 사항

(1)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사업관리·운영 가이드북이 제공되나요?

- 사업관리·운영 가이드북 제작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없으며, 설명회 및 실무자 워크숍, 컨설팅 등으로 사업관리·운영의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2) 사업 참여인력의 건강한연구실 관련 온라인 교육 수강 질문입니다. 3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참여 기간 중 1회 수강. 단, 최초 참여 학기에 수강하는 것이 맞는지요?

- 참여인력의 온라인 교육 동영상 강의는 참여기간 중 1회 수강하며, 최초 참여 학기에 수강하시는 사항은 3단계와 동일합니다.

(3) 종합정보시스템에 실무자 정보를 등록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실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연구단(팀) 연락을 취할 시 필요한 정보 관리 등의 차원으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4) 사업비집행신고센터를 BK21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 신설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기존 운영 중인 학교 내부 신고센터 및 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BK21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한 대학 내 센터 및 체계가 기존에 있다면 해당 센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5) ‘혁신인재양성사업’의 경우, 2022년에 이행사항 점검 후 불이행시 탈락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데, “이행사항”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 사업 기본계획 공고문에 기재된 혁신인재양성사업 “이행사항”은 신설학과의 경우 학생충원 여부, 융합전공의 경우 융합전공 신설 및 운영 여부, 교육연구단 구성 요건 충족 여부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6) BK21성과를 제출하는 시기와 NTIS 성과 입력 주기(매년 초 1회 여부) 외 성과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1년 안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매년 정기적으로 입력하셔야 하는 성과는 NTIS 성과입니다. 그 외 성과 입력 사항은 연도별 필요에 따라 요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7) ‘행정컨설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 컨설팅 방향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컨설팅 진행 전(하반기) 공지 드리겠습니다.

(8) 종합정보시스템에 외국인 참여대학원생 등록 시 한글 이름 꼭 넣어야 하나요?

-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한글 이름 입력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 1. 교육연구단(팀)장

(1) 지침 제8조제7항에 따르면 교육연구단의 장 부재 시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장을 변경하거나 대리체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교육연구단장 변경과 대리체제 운영 모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변경 신청 전에 반드시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해당 조항은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파견 등의 사유에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의 사유로 교육연구단(팀)장 부재 시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또는 대리체제로 운영하시길 바라며, 그 외 사유는 제4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BK21사업팀-10410(2021.03.08.),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교육연구단(팀)장 및 참여교수 사업 참여 기준 안내 참고

## 2. 참여교수

(1) 4단계 BK21 사업 신청 시 “2020년 8월말 정년퇴직 예정인 교수도 사업신청 시 학과(부) 전체교수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4단계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자에는 사업신청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수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비참여교수로 변경 불가능)” 이라는 내용을 안내 받았습니다. 신규 임용된 교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대학에 최초로 임용된 교수를 의미합니다.

(2) 참여교수 변경 시 참여시작일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참여교수 변경은 참여시작일 이전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 3. 신진연구인력

(1) 시간강의 규정의 경우 한 학기 6학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계절학과와 정규학기 포함해서 한 학기 6학점 인가요? 대학의 경우 계절학과와 정규학기가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규정이 완화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계절학과를 포함하여 한 학기당 6학점까지 시간강의 가능합니다.  
(여름학기 : 1학기에 포함/ 겨울학기: 2학기에 포함)

(2)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진연구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계약에 따라 대학의 보수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3) 타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참여율 계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훈령 제30조제8항에 따라 교육연구단(팀)장 또는 대학의 장이 타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BK21 사업에 전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 (확인서 구비 필수)하여 참여를 허가하는 경우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단,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 외 이중 소속 제한) 다만, BK21 사업 참여인력의 해당 타 과제 참여가능 및 인건비 등 수령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BK21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 4. 참여대학원생

(1) 대학원생이 방학 때 2개월간 인턴으로 회사에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이런 경우 2개월간 BK21 사업에 비참여로 변경하였다가 인턴 종료 후 다시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하면 되는지요?

- 참여대학원생 자격조건 미충족 시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하셔야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시점부터 교육연구단(팀)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재참여 가능합니다.

(2) 참여 대학원생이 1년 정도 해외로 연수를 갑니다. 이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 교육연구단(팀) 교육과 연구에 전념 가능하며, 참여요건을 만족할 시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대학원생의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참여대학원생 협약서는 사업 최초 참여 시 1회 작성하고 출력본으로 보관, 비치하는 것이 맞는지요?

- 참여대학원생은 참여 시점에 필수 구비서류로 협약서를 구비하시면 되고, 계속 참여인 경우 참여시점에 1회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참여대학원생 타 과제 참여 허가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 참여대학원생이 참여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연구단(팀)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교육연구단(팀)장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타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교육연구단(팀)장님 확인서 구비 필요)

(5)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신 외국인 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 외국인 등록증(D-2 비자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만료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전문연구요원인 대학원생도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의 대학원생 신분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며, 타 사업체 소속 전문연구요원은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소 소속인 경우 해당 연구소와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 간의 MOU협약 등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7) 군 위탁 장학생으로 재학 중인 대학원생도 4단계 BK21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군 위탁생은 참여대학원생 자격조건(전일제)을 미 충족합니다. 따라서 군 위탁 장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Ⅲ 교육연구단(팀) 사업비

#### 1. 연구장학금

(1)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이 개인사정으로 현재 본국에 돌아가서 연구장학금 지급은 정지한 상태입니다. 교육연구단(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1월~2월 중 참여대학원생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인데, 해당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되나요? 참고로 이 학생은 2월 중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참여대학원생 자격요건을 만족한 상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교육연구단(팀) 자체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도 가능합니다.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연구장학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대학원생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리 운영 지침 제13조 및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로만 지원 가능한데, 실제 집행 시에는 예산 내에서 집행하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수를 지정해도 되는지요?

- 실 집행 시에도 미래인재양성사업 과학기술 분야 교육연구단, 혁신인재양성사업 교육연구단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의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

(3)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이 인건비가 아닌 장학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생이 4주간 군사훈련을 가있는 동안 장학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 군사훈련은 교육연구단 연구수행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구장학금 상한선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인센티브도 상한액 제한 없이 지급 가능한 것이지요?
-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 또한 상한액은 없으나 합리적 평가기준, 지급기준(상한액 포함)을 정하여 자체운영규정에 명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참여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은 1개 학기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 최소 1학기 이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퇴·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교육연구단의 장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6) 박사수료생 A가 이번 2월 졸업합니다. 이후 POST-DOC 신분으로 연구실에서 연구를 계속 할 예정이며, BK21 연구비 규모가 작아서 타 과제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장학금은 2월 졸업일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해야 하는지요?
- 졸업일이 포함된 해당 월까지 사업에 참여한다는 교육연구단(팀)장 확인서 증빙 시 연구장학금을 일할계산 하지 않고, 2월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2월 이후 타과제로 계약을 하시는 시점부터는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의하여 4단계 BK21 사업에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 (7) 교내장학금 중 연구 또는 수업 지원으로 일정 시간 복무 시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도 연구장학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교내장학금 또는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합니다.
- (8) 지원대학원생이 학기 중 휴학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100% 환수해야 하나요?
- 휴학의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휴학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장학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9) 융합전공으로 신청한 교육연구단의 학생들은 필수로 융합전공을 신청하고, 학적부 상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해야 하나요?

- 참여대학원생이 참여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장학금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10) 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방학 중 해외 출국(본국 방문 등의 개인사유)시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구비서류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체류 시 해당기간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30일 미만의 경우에도 자체운영규정에 외국인학생 방학, 휴가기간 장학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1)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하한선(월3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BK21 사업비로 이 하한선보다 낮게 지급하고, 나머지 인건비 부족분을 교비로 지원해도 되는지요?

- BK21 사업비에서 월 하한액(300만원) 이상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하한액을 초과하는 인건비만 교비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300만원 이하로 지원한 신진연구인력의 실적은 성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사유서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 경우 퇴직금이나, 4대 보험금 제외하고 실제 월 급여액이 276.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월 300만원)은 퇴직금 및 4대보험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근로계약서 상 해당 금액(300만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월 급여액은 276.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신진연구인력이 BK21 사업에서 인건비를 받고, 본인의 연구 과제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연구단(팀)장이 해당 신진연구인력에 대해 4단계 BK21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타 과제에서 사업비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타 과제와 고용계약 체결로 이중소속이 될 경우 불가) 다만 BK21 사업비에서 300만원 이상 지원받아야 BK21사업 실적으로 인정가능합니다.

### **3. 교육과정 개발비**

(1) 교육과정 개발비에서 내부 구성원에게도 원고료 등 집행이 가능한가요?

- 정책과제 및 용역과제화한 경우에 한해서만 내부 구성원에게 원고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 **4.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1) 4단계 처음 진입한 교육연구단(팀)이더라도 기자재나 환경관리비 등 연구실 초기세팅에 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없나요?

-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사업비(직접비)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서 통계프로그램 등 구입이 가능한가요?

- BK21 사업에만 활용 가능한 연구용 소프트웨어인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3)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서 일회성 강좌 등록비나 워크숍 등록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BK21 사업 관련 일회성 강좌 등록비나 워크숍 등록비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4)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로 집행 가능한 산업체와의 공동활동 경비 등은 어떤 의미인가요?

- 산업체와 협력한 취업지도 관련 행사 개최비, 산업체와 협력한 교육

프로그램 및 취업프로그램 개발비, 산학협력활동과 관련된 회의비 등 관련경비를 뜻합니다.

(5) 디자인/영상 분야 교육연구단(팀)의 경우 학회나 박람회 참가 외 기업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참가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과제 관련성 있는 국내 세미나의 경우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6) 학술대회의 온라인개최로 구두/포스터 구분이 어려운 학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용 집행 시 구두 20건 이상을 확인할 수 없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학회 등록비는 국제화경비, 충족하지 못하는 학회 등록비는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5. 국제화경비

(1) 해외석학초청 세미나를 온라인(화상)으로 진행할 경우 국제화경비에서 연사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 해외석학 연사료는 국제화경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2) 장기 연수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에 보면 대학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외에 수업료, 숙박비,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연수기관에서 공동연구를 위한 실험을 진행할 시, 파견된 학교의 장비사용이나 분석을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교육훈련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장기연수 시 공동연구를 위한 실험을 진행할 때 파견된 학교의 장비 사용이나 분석을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장기연수비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 (3)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주관으로 개최 할 예정입니다. BK21 사업비로 지원 가능한 예산 비목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회의장 대여료, 행사 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 등 개최 경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 (4)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시 구비해야 할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감염병 발생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세미나 개최 시 온라인 개최에 대한 사유서, 온라인 개최 및 전문가 활용 계획 등이 포함된 사전 내부승인 결재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5)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제한되고 있어 국외 연수 등에 대한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 방문이 아닌 외국대학이나 MOOC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이나 또는 연수프로그램으로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 기관과의 MOU체결 또는 공식 초청장을 받은 경우라면 온라인 연수로도 집행 가능합니다.
- (6)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학회등록비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포스터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학회사이트에 포스터만 업로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 없이 포스터만 업로드 할 경우, 학회등록비를 단기연수 항목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 온라인 국제(학술)대회가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 18조(국제화경비)제3항제3호에 따른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비는 국제화경비 중 단기연수에서 집행 가능하고, 충족하지 않는 경우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7)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국외 자가격리 기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사업비로 참여대학원생에게 체재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제(학술)대회 기간 동안에만 지원이 가능한지요?

- 교육연구단(팀) 자체 운영 규정을 수립한다면 국외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한 국제(학술)대회 기간에 대해서 체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6. 교육연구단 운영비

(1)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급 가능하다면 교육연구단(팀) 내부인(교육연구단(팀)장, 참여교수)에게도 지급할 수 있나요?

- 자체평가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 지급은 자체운영규정에 준용하여 집행하시되 교육연구단운영비에 학술활동지원비에서 집행가능하고 참여교수에 대한 수당성 경비는 성과급 비목에서만(1인 연 480만원 이내) 지급 가능합니다.

(2) 성과급의 경우 예산사용이 필수인가요? 자체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연 480만원(1차년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 필수사용은 아닙니다. 다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집행 가능하며, 규정에 마련되지 않았다면 마련 후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연 480만원 한도에서 지급가능(1차년도 240만원 이내)하나 정기적, 매 월 동일한 금액지급은 불가(자체운영규정의 기여도 평가기준으로 차등지급 해야 함)합니다.

(3) 참여대학원생에게 교과서를 구매해서 나누어 주고 싶은데 사업비로 도서구입이 가능한가요?

- 문헌구입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문헌은 대학 내 소유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4) 4단계 Bk21 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학과로 초빙한 겸임교원(비전임, 시간강사)을 대상으로 세미나 참여에 따른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 동일학과(학부제 운영대학의 경우 동일 학부) 소속 전임 및 겸임교수, 신진연구인력(비전임, 시간강사),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 전문가활용비(강연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7. 기타

(1) 1차년도 협약이 늦어져 카드발급이 늦어졌습니다. 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 연구비카드 발급 전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사유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비 집행 계획 상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비목에서 논문 게재료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한 집행은 할 수 없나요?

- 논문 게재료 집행에 대해 계획서 상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수행 중 사업과 관련한 논문 게재료에 대해서는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비목별 예산기준 내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3) 교육연구단(팀) 행정 전담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의 명의로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교육연구단(팀)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행정 전담직원 또한 연구비종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rndcard.re.kr/>)에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 예산 산정

- (1) 선정시점 대비 현재를 기준으로 학생 수 점점 후 사업비 재산정이 가능한가요?
-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20.2.)에 따라, 규모 적정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지원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1년 2분기에 혁신인재양성사업 교육연구단 사업비 재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2. 예산 편성

- (1)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국제화경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나요?
- 국제화경비는 예산변경을 통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 (2) 성과급을 증액하여 재편성할 수 있나요?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1조에 따라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 (3) 예산에서 교육연구단 운영비를 10%이내로 편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5,000만원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10%이내 혹은 5,000만원 이내 기준 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2. 예산 이월

- (1) 1차년도 사업비는 이월 15%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육연구단 운영비 또한 제한 없이 남은 운영비를 2차년도 교육연구단 운영비로 이월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3단계와 마찬가지로 이월액 중

10%이내만 교육연구단 운영비로 이월하고, 차액은 다른 비목으로 이월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차년도의 경우 이월의 상한액은 없으며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3단계와 동일하게 전년도 교육연구단 운영비 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2차년도 총사업비(1차년도 이월액+발생이자+2차년도 사업비) 중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 공통

(1) 대학원 혁신 사업 중 신진연구인력을 위한 사업은 없나요?

- 대학원 혁신을 위해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연구인력 교육 및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2) 교육연구단(팀) 소속 참여대학원생이 대학원 혁신 사업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선정되었을 때, 교육연구단(팀)의 성과로도 인정 가능한가요?

- 대학원 혁신 사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한 성과가 교육연구단(팀) 사업 목적과 부합하다면 성과로 인정됩니다.

(3) 대학원 혁신 사업 2차년도 예산운영계획서 작성 시 최초 신청서와 달리 신규사업 또는 변경사업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재정지원사업은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대학원혁신사업에서는 수정사업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 수정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습니다. 연차평가 실적 보고서 작성 시 기존대비 수정된 사업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대학원혁신 예산이 미지원 대학의 경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대학원혁신 미지원 대학은 연차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평가 시에는 평가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학원 혁신 사업의 연차평가 평가 대상기간이 언제인가요?

- 대학원혁신 연차평가에서는 2020.9.1.부터 2021.8.31.까지 발생한 성과를 평가 하게 됩니다.

(6) 1차년도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이월금은 어느 시점부터 사용이 가능  
합니까?

- 대학에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한 이후 재단 승인 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7) 대학원 혁신 지원비는 언제, 어떻게 정산하나요?

-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3월1일부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2월말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8) 연차평가 통해 조정되는 대학원 혁신 지원비의 기준금액은 1차년도  
확정되어 지급된 금액인가요?

- 2차년도 확정되어 지급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차년도 예산 기준  
으로 3월에 70% 정도의 예산을 1차로 지급하고, 연차평가가 끝난 후  
(10월정도)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예산 총액 중 잔액을 지급할 예  
정입니다.

(9) 대학원 혁신 지원사업도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른 제제조치에 따라  
사업비 삭감을 적용을 받나요?

- 적용받습니다.

(10) 2021년(2차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2차년도 사업 협약  
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차년도 사업비에 대한 사항만 작성  
하면 될지 아니면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작성해서 제출  
해야 하는지요?

- 2차년도 사업비 예산안은 2차년도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만 작성하게  
됩니다.

(11) 회계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대학원 혁신 지원 사업비로 집행한 사용실적이 대상이 됩니다.

(12) 대학원혁신비 1차년도분은 한도없이 이월할 수 있고 비목간 비율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비 편성시 비목간 비율은 2차년도 사업비+1차년도 이월사업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비목간 비율을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2차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만 비목간 비율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 2차년도 대학원 혁신지원비 비목 간 편성 비율은 1차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13) 2월 말 기준 원인행위까지 하였으나 집행을 못하여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 예산에는 이미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는데 1차년도 이월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3월 혹은 4월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 1차년도 이월금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비는 당해 사업기간 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연도 집행하지 못한 잔액에 한해서 15% 이내 이월하실 수 있습니다.(1차년도 사업비 잔액은 100% 이월 가능) 또한 이월금은 2차년도 사업비와 합산하여 비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14) ‘대학원 혁신과 관련하여 채용된 인력은 대학원 본부 소속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에서 대학원 본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대학원 혁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부서들을 포함할 수 있는지요?

- 대학원 본부 및 그 하위부서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5) 온라인 설명회에서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기타 본부 부서에는 재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과대학에 재배부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특정 학과, 특정 단과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육연구단이 연합하여 대학원 전체에 확산이 가능한 공동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 학과, 교육연구단에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열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및 지출행위를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

영되는 것은 허용이 되는지요?

- 단과대학에 예산을 배부하는 것은 불가하며, 예산집행 및 지출관리도 대학원 본부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16) 2월 마지막 주에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나 세금계산서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3월 첫째 주에 지출결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2월 말까지의 법인카드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근거로 3월에 지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법인카드 및 연구비카드 사용의 경우 2월 말까지 사용한 경우 지출완료로 인정되며 과제기간 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지출은 3월 10일 이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17) 대학원혁신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대학원생이 아닌 학부생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학부생은 참여대상이 아니며, 지원 또한 불가합니다.

(18) 대학 전체 차원에서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대학원 혁신 지원비 회계 감사를 하는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대학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 2. 인건비

(1) 신규 인력채용 시 대학원 조직 이외 다른 본부 행정부서 산하 소속이 가능한가요?

- 대학원 본부에 소속되어야 하며, 타 본부 또는 부설기관 등 소속은 불가합니다.

(2) 대학원혁신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계약교수, 전담직원)에 대한 인

건비 기준은 없나요? 계약교수의 경우 교육연구단(팀)의 인건비 기준을 준용해도 되나요?

- 대학 자체규정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학원 혁신 지원비로 신입 전임교원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대학원 혁신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4) 대학원 혁신사업비로 교육연구단 비전임교원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교육연구단(팀) 비전임교원(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 지원 사업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 3. 국제화경비

(1) 우수한 해외 인재를 학위과정으로 유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펠로우십을 지급하거나, 또는 국제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RA를 쓰는 경우와 같이 국제화를 위한 펠로우십이나 RA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국제화경비 비목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 해당합니까?

- 우수 해외 인재 유치에 따른 경비는 국제화 경비로 집행하시며, 해당 학생이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해당 비용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국제교류를 위해 해외대학 관련기관에서 사회공헌, 메이커톤, 창업 컨설팅 계약을 맺고, 다년간 협회비 또는 용역계약비 등을 국제화 경비 비목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경비, 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 RA/TA 장학금과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미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외 차이점이 있나요?

- RA/TA 지원비의 경우 연구활동 등 관련 업무 진행을 통해 지원받는 장학금이며, 펠로우십 프로그램 장학금은 우수인재, 사회적 배려자 등 특성에 맞는 대학원생에게 장학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대상으로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대상은 참여대학원생(지원대학원생+미지원대학원생)이며 참여대학원생 외 신진연구인력 등은 펠로우십 프로그램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대학원생 학업성공과 연구성과 향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 활동비(회의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등)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때 휴학생 및 수료생, 미참여 학과(부)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나요?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가능하며, 휴학생과 미참여 학과(부)에만 별도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원혁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회의비 및 재료비 등을 집행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집행으로 환수 등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 운영 시 재학생 이외에 휴학생, 수료생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또한 미선정학과 학생도 참여 할 수 있나요?

- 재학생(연구생 등록된 수료생 포함)이라면 대학원 혁신 목적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4단계 BK21 사업 미선정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포상 대상은 특정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참여한 학생, 신진연구인력에 한정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교직원들도 포함이 되나요?

- 대학원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프로그램 참여대상에 대해 포상이 가능합니다.

(6) 미참여 학과(부) 직접 지원의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합니다.

- 미참여 학과(부)만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참여 학과(부) 소속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참여 학과만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하실 수 없습니다.

(7)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집행할 수 있나요? 개인 논문 작성 시 영문교정료 등과 같은 경비로 집행할 수 없나요?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지급은 하실 수 없습니다.

(8)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지출증빙은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9) 대학원 혁신 목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모전 선발팀에게 연구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때 연구지원비를 선지급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해도 되나요?

-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법인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9) 상담 프로그램, 국제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테블릿 PC등의 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 대학원 혁신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높은 기자재 (테블릿, PC) 및 연구재료비 등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집행은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로 집행 가능하며, 활용 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하

여야 합니다. 다만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등록된 기자재의 추가소요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의 후 집행 가능합니다.

(10) 참여대학원생이 연구 역량을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비 및 여비 등을 학생에게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나요?

- 사전에 해당 외부 교육기관과 대학원 혁신 목적으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관련 MOU체결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직접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집행이 가능하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11) 타과제에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RA/TA를 지원이 가능한가요?

- 참여하고 있는 타 과제가 BK21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를 제한하는 사업이 아니면 대학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12) 대학원 혁신지원비 중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로 소프트웨어(통계프로그램)를 구입할 수 있나요?

- 대학원 혁신 추진 목적과 부합하여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통계프로그램)는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범용성 높은 기자재 및 연구 재료비 등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자재 구입 시에는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단, 대학에 기존 등록된 기자재와 중복 불가)

(1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 교육과정 개발 추진 시 교원(교수) 등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정책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 교육과정 개발 시 정책연구에 내부 인력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나, 연구

수당 등 인센티브 성격의 비목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료와 강의료는 대학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14) 지침 제48조에 따른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시 발생하는 경비, 국내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각종 행사 경비는 ‘기타사업운영비’ 비목으로 집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지침 제51조 제2항에 따라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기타사업운영 경비는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비목으로 집행 하시면 됩니다.

## 5.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1) 대학원혁신을 위한 건물 증축시 설계용역비의 집행이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대학은 대학원혁신 추진을 위해 대학원혁신 계획서에 A부서 신설 및 A부서 중심의 건물을 증축(개축)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건물 증축은 교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만, 설계용역비는 대학원 혁신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 환경개선 목적의 기존 건물 유지보수 관련 경비만 집행 가능합니다. 건물 증축을 위한 설계도 증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2) 상담실 등 운영을 위한 외부 공간 대여료는 집행 가능한가요?

-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비용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3)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관련하여 다음 예시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1) BK21 사업 참여학과 전용 대학원생 공간이 아닌 단과대학 공용 대학원생 강의실 환경개선 비용
- 2) 단과대학 대학원생 전용공간이 아닌 단과대학 건물 및 공용시설 보수 비용

3) 단과대학 내 대학원생 휴게공간 조성 비용

4) 신진연구인력 연구실 환경개선 비용

- 대학원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집행 가능합니다.

(4) 학생 공용연구공간에 설치할 공기청정기, 화상회의용 웹카메라 등을 환경개선비에서 구입 가능한지요?

- 대학원 혁신조성목적으로 교육연구 환경개선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구입한 기자재는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 대학에서 자율 부여한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등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6.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1)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관련하여, 장비 하나의 가격은 3,000만원 이하 이나 여러개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개당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의 경우에만 전문기관의 심의대상입니다.

## 7. 기타

(1)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통 양식을 배포할 예정 인가요? 아니면 대학 또는 각 부서에서 자체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을 위한 양식은 대학 자체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교내 주요공간은 공간대여료를 받고 있는데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학교 내 공간 대여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 학교 내 공간대여료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3) 본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되는 경우, 학교는 부가세 면세기관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인데, 기관영수증만으로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기관의 경우 사유서를 구비 시 기관영수증도 인정 가능합니다.